



서울고등법원

제 1 - 2 행정부

판 결

사 건 2025누6626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이○○, 김○○

피고, 피항소인 1.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주○○

2.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4구합6988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특별시 ○○구청장이 2022. 9. 14. 한 취득세 6,670,322,4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 2022. 9. 15. 한 취득세 177,747,9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대상회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이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대상회사가 이 사건 리스차량과 관련하여 개별 리스이용자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금융리스의 경우 운용리스와 달리 그 본질적 기능이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그 경제적 실질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리스 자산을 시설대여업자인 대상회사가 아닌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 관련 법령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금융리스 자산에 대해 시설대여업자인 대상회사가 아닌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원고가 대상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의 실질적 귀속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차량의 취득'이란 차량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차량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시설대여회사가 리스물건인 차량을 새로이 취득하여 등록한 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금융리스의 경우, 비록 이와 같은 금융리스의 본질적 기능이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설대여이용자가 차량 등록 과정을 거쳐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참조), 시



설대여회사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 관련 법령에서 금융리스 자산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법인세 관련 법령의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법인세법 제43조), 유통세의 일종인 이 사건 취득세와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금융리스에서 시설대여회사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인 차량을 새로이 취득하여 등록한 후 제공하는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시설대여회사가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이상, 시설대여회사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 역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리스물건인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8

재판장 판사 차○○

 판사 박○○

 판사 윤○○